

대구대학교와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간 산학협동 협약서

제1조(목적) 대구대학교와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은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지원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.

1. 각종 기술에 대한 자문 및 정보협조
2. 학생 및 공단직원의 견학 및 교육장소 협조
3. 공동 연구시 상호 시설장비 이용 협조
4. 기타 협의에 의해 필요한 사항

제3조(연구) 양 기관은 상호협약하에 관련분야의 교육과정 개발, 교육교재 개발, 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, 이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협약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시설활용) 양 기관은 상호협약하에 필요시설을 교육의 장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다.

제5조(효력) 이 협정서는 양 기관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, 그 효력의 종료를 상대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료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추진된 협력사업에 대하여서는 당해 협력사업의 종결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.

제6조(기타사항) 본 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기타 세부사항들은 양 기관이 상호협약하여 결정한다.

2006. 5 . 8 .

이 용 두

대구대학교
총 장 이 용 두

김 기 부

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
이 사 장 김 기 부